

연구장비예산심의 FAQ(자주 묻는 질문)

2013. 5. 1(수)

[질문1]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절차와 절차별로 부처의 사업담당자,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가 각각 해야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1]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절차별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장비예산심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발송	
미래부(연구조정총괄과) → 부처별 R&D사업 총괄부서	
↓	
부처 및 산하기관 대상 공문 전파	
부처별 R&D사업 총괄부서 담당자 → 부처내의 R&D사업 담당부서, 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해당부처 산하기관*	
* 부처 직할기관(KAIST 등),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대상 공문 전파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한 협약 과제	연구관리전문기관 → '14년도 과제 수행예정인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부처와 직접 협약 과제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 → '14년도 과제 수행예정인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	
심의신청자료(초안) 작성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 세부사업별 심의요청서(필수),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필수)를 작성하고 견적서(필수), 사전기획보고서(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수요조사 결과(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첨부	
↓	
심의신청자료(초안) 취합 및 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한 협약 과제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 연구관리전문기관 →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
부처와 직접 협약 과제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
↓	
심의신청자료 검토 및 확정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	
-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심의신청자료(초안)을 검토하여 확정함(필요 시 연구책임자에게 수정 요청)	
- 연구장비 심의신청자료가 '14년도 R&D사업별 예산요구서의 내용 및 예산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부처가 해당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동의할 경우에만 연구장비 심의자료 제출	
↓	
심의신청자료 제출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	
-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는 검토 완료한 연구장비 심의자료를 연구장비예산심의 사이트(http://nfec-budget.ntis.go.kr)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제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처내의 R&D사업별 담당자가 연구책임자에게 제출을 위임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부처 사업담당자 검토 결과, 자료에 문제가 없으므로 연구책임자에게 온라인 제출을 위임함” 이라는 문구 포함) 연구책임자는 심의자료 온라인 제출 시 해당 이메일을 캡처한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야 인정됨	

[질문2]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2] ①세부사업별 심의요청서(필수), ②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필수), ③견적서(필수), ④사전기획보고서(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⑤수요조사 결과(수요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3]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필수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답변3] 필수사항입니다. 정부R&D예산으로 1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실 경우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4] 1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심의를 받지 않고 구축할 경우 제재조치가 있나요?

[답변4] 정부는 R&D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심의통과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않고 장비를 구축하였을 경우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도 예산심의 시에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질문5] 지금 수행 중인 과제가 있는데 '14년도 예산으로 구축할 연구장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지 않고 내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장비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른 심의위원회(부처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이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변경심의')에서 심의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5] 장비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당연차 연구계획서 작성 직전에 연구장비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정부는 '07년부터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에 투입되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R&D예산을 신청하는 예산편성 시점(전년도 6월)에 미리 장비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R&D예산 편성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심의제외 대상('14년도 신규과제 등)이 아니면 모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내년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6] 향온향습실 같은 연구시설도 심의대상인가요?

[답변6] 연구시설도 심의대상이 맞습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는 모두 심의대상이며, 향온향습실의 경우 환경조성·사육시설에 포함되므로 심의대상입니다.

[질문7] '13년 예산으로 구축하려고 작년에 연구장비예산심의를 신청하여 통과한 장비가 있습니다. 사정상 구축시기를 미루어 '14년 예산으로 구축하려고 하는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7] 구축시기가 달라지면 예산의 적정성이나 기구축 장비와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8]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내년에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8] 해당 장비 단종, 연구계획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심의를 받아 장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는 NFEC으로 신청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고, 순수연구개발사업 및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는 해당부처의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9] 이번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장비라도 '14년도에 '부처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나 기관별 '장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9]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장비를 구축하면 되므로 부처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등 다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10] 구축하고 싶은 장비가 있는데 '14년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에 장비를 신청하면 추가예산을 배정해 주나요?

[답변10] 연구장비예산심의는 추가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장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11] 연구장비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나요?

[답변11]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연구장비 금액이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이상의 과도한 수량을 신청한 경우, 불필요한 장비를 신청한 경우 등 연구장비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12] 2개 과제(사업)의 예산을 합하여 하나의 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어느 과제(사업)로 연구장비예산심의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12] 장비구축비를 보다 많이 투입하는 과제(사업) 또는 메인장비를 구입하는 과제(사업)로 연구장비예산심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각각의 과제(사업)에서 장비구축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씩인지 구분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질문13]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타기관 또는 타부서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비용인 시험분석비용(연구계획서에 임차비라고 표기하기도 함)이 '14년 예산 중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13] 시험분석비용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장비 임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로 장비 자체를 임대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기관 또는 타부서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비용인 시험분석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14] 시제품 제작비용 또는 플랜트 건설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14] 시제품 제작 또는 플랜트 건설 자체는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장비를 개발·설계할 경우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단, 부품이나 구성품 중 단가 1억원 이상인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품 또는 구성품이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예산 적정성 위주로 심의 예정)

[질문15]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도 심의대상인가요?

[답변15]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장비구축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16] 매칭펀드는 아닌 정부출연금 100%인 과제입니다. 1억원 이상 장비의 총금액 중 일부를 연구수행기관 자체예산에서 납부하고 일부만 해당과제 연구비(R&D예산)에서 납부할 예정인데 심의대상인가요?

[답변16] 매칭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과제 연구비(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할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장비 총금액의 50% 이상을 해당과제 연구비(정부출연금)로 납부할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17] 연구책임자가 구축하려는 장비를 직접 신청(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17]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결과는 부처별 '14년도 R&D예산 편성에 반영되므로,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여(부처 사업담당자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장비심의를 직접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월 20일에 부처가 제출할 예정인 사업별 예산요구서와 연구장비심의 신청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부처의 사업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부처담당자가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 부처 사업담당자가 자료검토를 완료했고 연구책임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자료(이메일 스캔 파일 등)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인정됩니다.